

입법예고(안)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2. 5.

농 립 축 산 식 품 부
(농기자재정책팀)

1. 개정 이유

비포장비료 관리 강화 등을 위해 비료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690호, 2022. 1. 4. 공포)됨에 따라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 비포장비료등의 신고 및 수리 절차 및 서식,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 중 공급·사용 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비료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우량비료의 지정제도, 통합 폐업신고제도 도입에 따른 서식 보완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우량비료 지정제도의 보완(안 제5조 및 별지 제5호서식)
 - 우량비료 지정 신청 시 기존에는 재배시험성적서,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농업 생산성 증대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신청 분야별(농업환경·토양의 보호, 농업 생산성 증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서류만을 제출하도록 개선
- 비료의 가격표시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기관 변경(안 제14조)
 - 법 제14조 제4항(비료의 보증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 점검) 신설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비료의 보증표시 및 판매 관리의 권한을 추가로 위임함에 따라 비료의 가격표시에 관한 고시를 기존 농촌진흥청장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
- 비포장비료등 미신고, 거짓 신고자에 관한 행정처분 조항 신설(안 별표2 개정)
 - 비료관리법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제1항 및 제2항 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비포장비료등을 신고(변경 신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항 신설
-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신설(안 제14조의3 및 별표3 신설)
 - 법 제19조의2 제1항 개정에 따라 비료의 유통·공급·운송 단계, 보관 단계, 사용 단계의 유실 및 비산과 악취방지 등을 위한 관리기준을 신설

-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 기준 신설(안 제14조의4 및 별표 4)
 - 법 제19조의2 제3항 신설에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 기준을 신설
-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 중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를 하여야 하는 비료를 지정(안 제14의5 및 별표 5 신설)
 - 법 제19조의2 제5항 신설에 따라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비료 중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비료를 정함
- 비포장비료등의 신고 절차 및 서식 등 신설(안 제14의6 및 별지 제24호,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
 - 법 제19조의2 제5항·제6항 신설에 따라 비포장비료등의 공급·사용 신고서(별지 제24호), 공급·사용 신고 수리증(별지 제25호), 공급·사용 변경신고서(별지 제26호), 공급·사용 변경 신고 수리증(별지 제27호), 신고 수리 및 변경수리대장(별지 제28호)의 서식을 신설하고 절차를 마련
- 통합 폐업신고제도와 휴업 및 폐업 신고 시 등록(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등록(신고)증 첨부 면제 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서식 변경(별지 제12호, 제16호)
 -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개정안에 따라 비료생산업 폐업·휴업 신고서(별지 제12호)와 비료수입업 폐업·휴업 신고서(별지 제16호)의 서식을 변경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해당 없음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를 “**각 호 중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특성을 적은**”을 “**특성에 대해 작성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업환경·토양의 보호효과에 대한 분석자료

5.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분석자료

제14조제5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의4(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의5(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 중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하여야 하는 비료) 법 19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 중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비료는 별표 5와 같다.

제14조의6(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한 비료 등의 공급·사

용신고 및 변경 신고) ①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한 비료 또는 비료의 종류별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비료(이하 “비포장비료등”이라 한다)의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비포장비료등 공급·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2. 비료생산(수입)업자 보증표
3. 계량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비료의 공급·사용으로 인해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없으며 법 제19조의2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비포장비료등 공급·사용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비포장비료등 공급·사용 신고수리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비포장비료등의 공급·사용을 신고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비포장비료등 공급·사용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

1. 비료생산(수입)업자 보증표
2. 계량증명서

④ 제3항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 신고 내

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비료의 공급·사용으로 인해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없으며 법 제19조의2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비포장비료등 공급사용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비포장비료등 공급·사용 변경 신고수리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증 또는 변경 신고수리증을 발급한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비료생산업자등이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등록·신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수리증 또는 변경 신고수리증 발급 사항을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2호	등록취소		
--	----------------	------	--	--

별표 2 제2호나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제10호	영업소 폐쇄		
---	----------------	--------	--	--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호(○) 중 “이전:”을 “이전 및 대표자 변경:”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즉 시”를 “7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즉 시(7일 이내)”를 “7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제14조의3 관련)

1. 비료의 유통·공급·운송 단계

가. 비료의 상·하차 중에는 강우, 바람, 비의도적 사고 등에 따른 비산(飛散) 또는 누출로 인근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차단막 설치, 배수로·논둑·밭둑 정비 등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한 비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운송 중에는 비료가 직사광선, 강우,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천막·비닐 등으로 포장하여야 하고, 액상 형태의 비료는 도로, 농지 등에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2. 비료의 보관 단계

가. 비료생산업자와 비료수입업자는 비료를 농산물, 농약 등 다른 농자재와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장소에는 어린이가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비료 유통·공급·운송 전 비료생산업자와 비료수입업자가 비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직사광선, 강우,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화재의 위험이 없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비료 사용 전 비료 사용자가 영농계획 및 작업 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강우 등에 의한 유출 및 악취 저감을 위해 지면에서 10cm 이상을 띄우고 천막·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면과 간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포장을 하지 않은 비료의 경우는 지면에 천막·비닐 등을 설치한 후 포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

3. 비료의 사용 단계

가. 비료사용자는 비료를 작물의 재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비료사용자는 비료를 사용할 때 비료공정규격에 살포 기준이나 살포 시 유의 사항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농지 등 살포 지역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 기준(제14조의4 관련)

1. 기본기준

- 가. 단위 면적당(1,000㎡)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은 3,750kg으로 한다.
- 나. 가목의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영농계획 및 작업 사정 등에 따라 동일 지번에 여러 차례 나누어 공급·사용하더라도 연간 공급량·사용량은 단위 면적(1,000㎡)당 3,750kg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보통비료나 부산물비료를 각각 사용하는 경우,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단위 면적(1,000㎡)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은 3,750kg으로 동일하다.
- 라. 액체 상태의 비료는 1L를 1kg으로 본다.

2. 예외 사항

- 가. 비료를 공급·사용하려는 해당 지번의 토양검정결과(「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토양검정결과 결과에 한함)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을 초과하는 비료의 공급·사용이 필요하다는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아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단위 면적(1,000㎡)당 3,750kg 이상의 물량만큼 추가로 공급·사용할 수 있다.
-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간척지 토양 개량, 중금속 피해지역 토양 복원을 위해 긴급히 토양개량제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 단위 면적(1,000㎡)당 3,750kg 이상의 비료를 공급·사용할 수 있다.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설>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비료 중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하여야 하는 비료
(제14조의5 관련)

1. 보통비료

비료의 종류		신고 대상 비료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륨질비료, 복합비료,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고토비료		1,000kg 또는 1,000L를 초과한 중량 또는 용량으로 포장하거나 용기에 넣은 비료
미량요소비료		20kg 또는 20L를 초과한 중량 또는 용량으로 포장하거나 용기에 넣은 비료
그 밖의 비료	석회처리	20kg를 초과한 중량으로 포장하거나 용기에 넣은 비료
	상토 1호, 2호	1,200L를 초과한 용량으로 포장하거나 용기에 넣은 비료
	제올라이트, 벤토나이트, 아미노산 발효부산액, 부산동물질액, 아미노산발효부산박	20kg 또는 20L를 초과한 중량 또는 용량으로 포장하거나 용기에 넣은 비료
	재, 숯	1,000kg을 초과한 중량으로 포장하거나 용기에 넣은 비료

※ 중량 또는 용량의 기준은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 보증표에 기재한 중량과 용량을 의미한다.

2. 부산물비료

비료의 종류	신고 대상 비료
부숙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미생물비료, 그 밖의 비료	1,000kg 또는 1,000L를 초과한 중량 또는 용량으로 포장하거나 용기에 넣은 비료

※ 중량 또는 용량의 기준은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 보증표에 기재한 중량과 용량을 의미한다.

비료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설정·변경: 80일 ○ 폐지: 60일
------	-----	------	---------------------------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비료의 종류	주성분 함량	유해성분 함량	그 밖의 규격	원료명

신청사유

「비료관리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료 공정규격의 설정·변경·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및 시료	1. 재배시험성적서 1부 2. 제품의 성분분석서 1부 3. 제조방법설명서 1부 4. 시료 500그램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우량비료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앞 쪽) 15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분야	농업환경·토양의 보호		농업생산성 증대		온실가스 감축
신청 내용	비료의 종류 및 명칭	보증성분 함량	유해성분 함량	그 밖의 규격	
보급 필요성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우량비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재배시험성적서(필수) 1부 2.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비료의 특성에 대해 작성한 서류(필수) 1부 3. 농업환경·토양의 보호효과에 대한 분석자료(선택) 1부 4. 농업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선택) 1부 5.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분석자료(선택) 1부	수수료 없 음
------	--	------------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및 대표 자 변경: 7일 ○ 비료명칭의 추가: 4일 ○ 그 밖의 사항 변경: 즉시
[]등록 []신고 번호		제 호	
신고인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1조제1항에 따라 ([]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 비료수입업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비료생산업 등록증 1부 []비료수입업 신고증 2.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3.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4. 재배시험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비료생산업 []폐업, []휴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신고인	법인(상호)명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폐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폐업 또는 휴업의 사유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료생산업의 []폐업,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비료생산업 등록증	수수료 없 음
	※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하단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료생산업 등록증 분실사유]	

참고사항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비료수입업 []폐업, []휴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고 번호	제 호		
신고인	법인(상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고 내용	폐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폐업 또는 휴업의 사유		

「비료관리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료수입업의 []폐업, []휴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비료수입업 신고증 ※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하단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료생산업 등록증 분실사유]	수수료 없 음

참고사항

「비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비포장비료등 공급·사용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공급자)	법인(상호)명	비료생산(수입)업 등록(신고)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용인 (사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비료의 종류	공급· 사용 일시	공급·사 용 면적 (㎡)	연간 최대 공급·사용 가능 물량(kg)	공급·사용 물량 (kg)	공급·사용지 (지번)

「비료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비포장비료등의 판매·유통·공급·사용을 위해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신고서 작성 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

- 비료의 종류는 등록(신고)증에 기재된 비료의 종류(예 : 가축분퇴비, 퇴비, 석회처리 등)를 기재합니다.
- 공급일시는 비포장 비료를 농지 등에 실제 공급하는 일시(2022. 7. 15. 09:00~12:00)를 기재하고, 비료생산·수입업자가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일시의 기재방식과 동일하게 사용일시를 기재합니다.(7.15. ~ 7.25. 09:00~12:00 등 기간으로 기재 불가)
- 공급·사용물량(kg)은 공급·사용하는 실증량을 기재합니다.(발급한 보증표의 실증량과 일치하여야 함)
- 공급·사용면적(㎡)은 공급·사용 소재지의 전체 면적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연간 최대 공급·사용 가능물량은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공급·사용물량(1,000㎡당 3,750kg)을 기준으로 공급·사용하려는 면적으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 공급·사용물량(kg)은 실제 공급·사용하려는 물량을 기재합니다.
- 공급·사용 소재지는 해당 비료가 사용되는 지번을 모두 기재하고 각 지번별로 별도로 기재합니다.
- 공급받는 자 또는 사용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 계량증명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계량증명서(계량일자, 품명, 실제 중량 및 총중량, 차량번호 등)를 공급·사용 후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첨부서류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1부, 비료생산(수입)업자 보증표 1부, 계량 증명서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비포장비료등 공급·사용 신고수리증

신고수리 번호						
신고인 (공급자)	법인(상호)명			비료생산(수입)업 등록(신고)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용인 (사용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비료의 종류	공급· 사용 일시	공급·사 용 면적 (㎡)	연간 최대 공급·사용가 능 물량(kg)	공급·사용 물량(kg)	공급·사용지 (지번)

「비료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비포장비료등의 판매·유통·공급·사용을 위해 위와 같이 신고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참고사항

신고인은 공급·사용 후 2일 이내에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계량증명서(계량일자, 품명, 실제 중량 및 총중량, 차량번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비포장비료등 공급·사용 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공급·사용 물량, 사용인(사용자) 변경: 2일 ○ 그 밖의 사항 변경: 즉시
------	-----	---

신고인 (공급자)	법인(상호)명	비료생산(수입)업 등록(신고)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용인 (사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변경 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	--

「비료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비포장비료등의 공급·사용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신고서 작성 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

1. 변경 신고 시에도 반드시 사용자(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신고 내용에는 기존 신고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항목(비료의 종류, 공급·사용 일시, 공급·사용 면적 등)과 변경 전과 변경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3. 변경 사유에는 기존 신고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4. 계량증명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계량증명서(계량일자, 품명, 실제 중량 및 총중량, 차량번호 등)를 공급·사용 후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비료생산(수입)업자 보증표 1부, 계량 증명서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비포장비료등 공급·사용 변경 신고수리증

변경신고 수리번호						
신고인 (공급자)	법인(상호)명			비료생산(수입)업 등록(신고)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용인 (사용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변경 신고 내용	비료의 종류	공급· 사용 일시	공급·사 용 면적 (㎡)	연간 최대 공급·사용 가능 물량 (kg)	공급·사용 물량(kg)	공급·사용지 (지번)

「비료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4항에 따라 비포장비료등의 공급·사용을 위해 위와 같이 변경 신고 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참고사항

신고인은 공급·사용 후 2일 이내에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계량증명서(계량일자, 품명, 실제 중량 및 총중량, 차량번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비포장비료등 공급·사용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대장

접수 번호 변경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고 수리 번호	수리 일자	신고인 (공급자)	사용인 (사용자)	비료의 종류	공급·사용		연간 최대 공급·사용 가능 물량 (kg)	공급·사용 물량(kg)	공급·사용지 (지번)
	접수 일자	변경 신고 수리 번호	수리 일자				일시	면적 (㎡)			
000	'00.0.00.	000	'00.0.00.	이순신	홍인형	퇴비	22.3.1. 10:00	990㎡	3,750kg	3,750kg	세종시 00면 00리 100번지
000	'00.0.00.	000	'00.0.00.	이순신	홍길동	퇴비	22.3.7. 10:00	990㎡	3,750kg	3,750kg	세종시 00면 00리 101번지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우량비료의 지정 신청)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량비료 지정신청서에 다음 <u>각 호의</u>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량비료의 지정 신청) ----- ----- ----- <u>각</u> <u>호 중에 해당하는</u>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비료의 <u>특성을</u> 적은 서류	2. ----- -- <u>특성에 대해 작성한</u> ----- -----
<u><신설></u>	3. <u>농업환경·토양의 보호효과에 대한 분석자료</u>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u><신설></u>	5. <u>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분석자료</u>
제14조(보증표시 및 가격 표시방법) ①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비료의 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u>농촌진흥청장</u> 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보증표시 및 가격 표시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국립농산물</u> <u>품질관리원장</u> -----.
<u><신설></u>	제14조의3(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u>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u>

<신 설>

제14조의4(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 법 제19조
의2제3항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
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은
별표 4와 같다.

<신 설>

제14조의5(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 중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하여야 하는 비료)
법 19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비
료의 종류별 또는 용량을 초과하
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
중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비료는 별
표 5와 같다.

<신 설>

제14조의6(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한 비료 등의 공
급·사용신고 및 변경 신고) ①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
니한 비료 또는 비료의 종류별 중
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비료(이하 “비포장
비료등”이라 한다)의 판매·유통
·공급 또는 사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비
포장비료등 공급·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

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1.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
수입업 신고증 사본

2. 비료생산(수입)업자 보증표

3. 계량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
을 검토한 결과 해당 비료의 공급
· 사용으로 인해 법 제19조의2제2
항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없으며 법 제19조의2제3항의 기준
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른 비포장비료등 공급·
사용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대장
에 기록하고,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비포장비료등 공급·사용 신
고수리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
야 한다.

③ 비포장비료등의 공급·사용을
신고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비포장비료등
공급·사용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급 또
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

1. 비료생산(수입)업자 보증표

2. 계량증명서

④ 제3항에 따른 변경 신고서를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변경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비료의 공급 · 사용으로 인해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없으며 법 제19조의2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비포장비료 등 공급사용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비포장비료 등 공급 · 사용 변경 신고수리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증 또는 변경 신고수리증을 발급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해당 비료생산업자등이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등록 · 신고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수리증 또는 변경 신고수리증 발급사항을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